

부품 및 소재의 신뢰성 보험 상품에 관한 연구

홍연웅¹⁾

초 록

부품 및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03년 4월부터 운영되는 신뢰성보험사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검토하며, 신뢰성보험의 개념, 담보하는 위험의 분류, 운영체계 및 상품의 설계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서론

「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품·소재법”이라 한다)」의 시행(2001.4.1)을 계기로 개발된 부품·소재의 시장진입 애로 요인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신뢰성 평가·인증 및 신뢰성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조물 책임법」과 더불어 부품·소재 및 제조물의 신뢰성 및 안전성의 보장과 인증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뢰성 인증품목의 신뢰성 저하로 발생하는 물적 피해를 배상하는 신뢰성보험제도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신뢰성인증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신뢰성보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신뢰성 보험과 관련된 각종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신뢰성 보험의 약관을 토대로 동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2. 신뢰성보험 개요

신뢰성보험은 국내기업체가 생산한 부품 및 소재에 대하여 신뢰성인증센터(RAC; Reliability Assessment Center)에서 신뢰성을 인증하고 이를 수요기업이 사용할 때 인증한 부품 및 소재의 신뢰성 상실로 인하여 수요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일종의 손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성 보험의 도입으로 부품 및 소재의 수요기업은 국산제품사용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으며 생산자에게는 신뢰성의 상실로 인한 배상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예방 또는 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부품·소재 생산업체의 경영안정화와 국산 부품 및 소재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성 인증기반의 구축과 더불어 2003년 4월부터 시행될 신뢰성보험은 신뢰성평가가 시급한 품목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주요 품목으로는 PCB, 콘덴서, 릴레이 등의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등으로 점진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1) 동양대학교 인터넷산업공학부 교수, ywhong@phenix.dyu.ac.kr

2.1 위험 분석

1)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크게 제품의 결함에 기인된 사고로 인한 소비자 등 타인의 신체장애(Bodily Injury)와 제품의 결함에 기인된 사고로 타인에 입힌 재물손해(Property Damage)로 구분된다.

2) 제조업자의 자체손실

부품의 하자로 인한 제조업자의 자체손실은 제품의 품질불량손해, 제품의 성능이나 기증저하로 다른 제품에 미친 손해, 제품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 제품자체의 손해, 결함 있는 제품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으로 구분된다.

2.2 상품 체계

신뢰성보험은 기본적으로 부품 및 소재의 제조업자가 보험계약자이면서 동시에 피보험자이나, 정책의 도입취지상 완성품 제조자가 실질적인 보험의 수익을 얻는다. 부품 및 소재업체와 관련된 보험은 전술한 위험분석에 따른 제조물보증책임, 회수비용, 제조물배상책임, 기업휴지(business interruption)를 담보하는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제조물보증책임, 회수비용, 제조물배상책임의 경우 부품제조업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며 완성품제조업자 또는 소비자가 보험금청구원을 가진다. 기업휴지의 경우는 부품 제조업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며 피보험자는 완성품제조업자가 된다.

<표 1> 신뢰성보험과 약관구성 내용

구분	담보 위험
기본담보	제조물보증책임담보, 제조물회수비용담보부분
선택담보	제조물배상책임담보부분, 기업휴지담보부분(완성품 및 부품업체)

3. 제조물 책임보험과의 비교

신뢰성보험을 2002년 7월 시행된 제조물책임과 비교하면 책임법리와 보험사고의 요건 및 가입대상 등에서 <표 1>과 같은 차이가 있다. 신뢰성 보험은 보험계약자(부품·소재 제조업체)의 청약과 회사(수출보험공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책임을 따르는데 비하여 제조물 책임보험은 엄격책임주의를 따른다. 엄격책임이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그가 그 결함에 대한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종래에는 결함에 대한 제조자의 과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엄격책임 이론이 인정된 후에는 소비자가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결함의 존재만 입증하면 된다.

<표 2> 신뢰성보험과 제조물책임보험의 비교

구분	신뢰성보험	제조물책임보험
근거	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 유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물책임법
법리	계약책임	엄격책임
보험사고	신뢰성 상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가입대상	신뢰성인증을 받은 부품 및 소재의 제조업체	자율가입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보험사고의 경우 신뢰성보험은 신뢰성의 상실을 보험사고로 정의하지만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 제조물의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되는 손해 배상책임을 의미한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에서 정의하는 제품자체의 결함인 설계상의 결함과 제조상의 결함은 제품의 안전기준 및 품질인증과 직접 관련될 뿐만 아니라 신뢰성의 상실이라는 신뢰성 보험의 사고 또한 신뢰성마크를 부착한 제품일지라도 안전성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는 엄격책임 법리를 따르는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보험의 제도적 근거를 살펴보고 신뢰성 보험상품의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신뢰성보험은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하나의 제조물책임대책으로 국산 부품·소재산업의 신뢰도 확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 보험에 대한 부품·소재 생산자의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인수주체 및 제도 운영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현

- [1] ——, 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 유통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자원부, 2000.
- [2] 한국수출보험공사, 부품 및 소재의 신뢰성보험약관
- [3] 홍연웅 외 5인, 신뢰성인증보험제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p.235-239, 안전경영과학회, 2001.